



제1556호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예 규

- 예 규 제 8 5 호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예규 2

공 고

- 공 고 제 1 6 5 7 호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입법예고 4
- 공 고 제 1 6 6 0 호 도로지정 공고 11
- 공 고 제 1 6 6 8 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에 따른 설치대상자 선정 공고 13
- 공 고 제 1 6 7 8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 통보 56
- 보 건 소 공 고 제 7 7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60

고 시

- 고 시 제 1 3 4 호 코로나 19 관련 남동구 관내 집합행위 금지 해제 고시 61
- 고 시 제 1 3 5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모래마을 4호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62
- 고 시 제 1 3 6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64

회 람								
----------------	--	--	--	--	--	--	--	--

예 규

남동구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8월 20일

남동구 예규 제85호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예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법 제88조제3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법률 제16854호, 2019.12.31.,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개정내용 반영 :
법 제88조제3항 → 법 제88조제4항(안 제3조제4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657호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 주민참여 및 지원”조항 신설(‘19.12.3. 개정, ‘20.6.4. 시행)
 -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18.5~)한 안전보안관 제도의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 8. 14. ~ 9. 3. (20일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안전보안관의 위촉(안 제3조)
 -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안 제4조)
 - 대표단 구성(안 제5조)
 -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안 제8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314, FAX 453-231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6. 참고자료

-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 주민참여 및 지원” 조항 신설('19.12.3. 개정, '20.6.4. 시행)
-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18.5.~)한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위촉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안 제3조)
-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안 제5조))
-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안 제7조)
-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안 제9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남동구 조례 제2020 - 1657호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동구민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 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660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14일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
3. 공고내용
 - 도로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59번지
 - 도로개요 : 길이 35m, 너비 1m, 면적 35㎡
4. 도로지정 내역

도로 위치	소유자	도로면적(㎡)	도로길이(m)	도로너비(m)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59번지	오영선 장선재	35	35	1

5. 공고기간 : 2020. 08. 14 ~ 2020. 08. 31.(17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도로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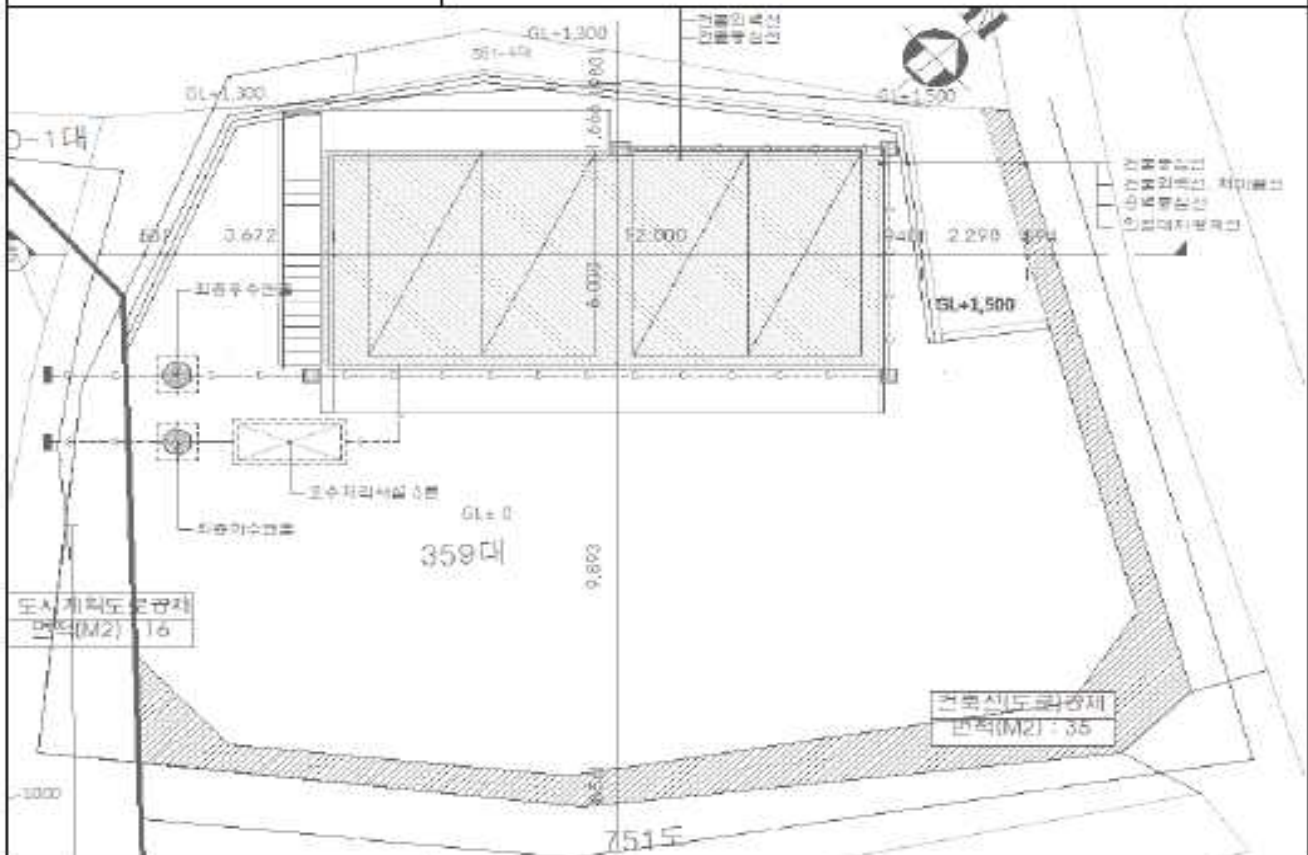
위 치 도

축척 : 임의



배 환 도

축척 : □ 1/600, □ 1/120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장수동 359

공 고

남동구공고 제2020-1668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에 따른 설치대상자 선정 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10),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본 공고는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를 위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남동구고시 제2019-1949호(2019.11.07.)] 중 금회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설치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1. “배치계획”이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국도·광역시도 간선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노선”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광역시도 간선도로 중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는 노선을 말한다.
3. “배치정수”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수량을 말한다.
4. “배치지점”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되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위치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배치계획에 포함한다.
5. “허가권자”란 남동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금회 배치노선)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금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금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노선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와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나) 규정에 따라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충전소 설치 목적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 전에 이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설치대상자로 선정 받아야 하며 선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자격

- 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지정당시거주자”이거나,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자로,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가), 나) 및 라) 규정을 따른다.

② 입지기준

- 가.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 및 「시행령」 제22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및 훼손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임상이 양호한 임야(국토환경성평가지도 1~2등급)나 우량농지를 포함하는 부지는 제외한다.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차량진출입로 불허구간에 해당하는 구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다.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지역과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 그리고 터널 출입구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라.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하며,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충전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 1천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된 후에는 사업계획서상 기재한 부지면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허가(형질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바. 토지는 자기소유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1) 본 공고에 의한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본다.

2)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야 한다.

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배치계획에 의거 설치된 기존의 주유소를 폐지하고 충전소로 용도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의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신청지에서 제외(다만 신청지가 상대보호구역일 때,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지 않음)한다.

자. 충전소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 및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③ 시설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붙임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 나. 충전소의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적합하게 작성한 세부계획서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기준과 해당 점용시설 주변도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제5조(타법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도로법, 산림기본법, 학교보건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하천법, 환경관계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남동구 및 인천시 시·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금회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 및 처리방법)

- ① 금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에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은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완비(페이지 기재 및 간인 필수)하여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1세대 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③ 타인토지로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 ④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은 서류검토 후 적정 등록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⑥항의 선정순위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순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별표3]의 추천요령에 의거 처리한다.
- ⑤ ⑥항의 선정순위 및 [별표3]의 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배치계획 및 관련법령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선정이 취소되거나 설치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충전소 잔여 배치정수의 경우, ⑥항의 선정순위 및 [별표3]의 추천 우선순위의 다음 순위 신청자를 설치대상자로 선정한다.

⑥ 설치대상자 선정순위

- 1순위 : 도심 내 기존 충전소를 운영하는 자가 기존의 충전소를 폐쇄하고 개발 제한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이 경우 폐쇄된 충전소 부지에 재설치 불가)
- 2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 3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 4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 5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⑦ 공람기간 : 2020. 8. 18. ~ 2020. 9. 18. (31일간)

⑧ 접수기간 : 2020. 9. 21. ~ 2020. 9. 25. 18:00까지 (5일간)

⑨ 신청기간 중에 신청 접수자 및 선정자가 없는 경우, 설치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다시 공고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처리 할 수 있다.

⑩ 사전 신청이나 접수기간이 경과된 후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한 자는 이 공고문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한 것으로 보고 무효 처리한다.

제7조 (용도변경금지 등)

1. 본 공고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한 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소(부대시설을 포함)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원상복구 및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행정대집행 및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명의변경 금지)

1. 본 공고에 따라 설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소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2.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명의를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 ① 본 공고문에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② 행위허가 승인처리 후 1년 이내에 충전소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③ 충전소 설치대상 선정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개발제한구역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충전소 부재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선정된 자가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충전소)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동구청장은 기존 선정자를 취소하고 재공고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수기간으로부터 설치대상자 선정일까지의 기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문 의 처 도시재생과 그린벨트팀 (☎ 032-453-2970)
생활경제과 친환경에너지팀 (☎ 032-453-6120)

【별표 1】

금회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

☐ **금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

연번	배치노선 명 (해당 도로)	구 간 현 황		연장	충전소 배치정수	비 고
		시 점	종 점			
1	호구포로(동측)- 비류대로(남측)- 소래로(서측)	논현동 513-3	논현동 33-151	4.2km	1	금회 공고

☐ 금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도



※ 공통사항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곳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터널구간의 출입구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충전소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충전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포함)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다만 신청자가 상대보호구역일 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지 않음)

별표 2】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청자격 및 증명서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동 시행령 별표1 5호 마-10)

충전소 신청자격	확 인 기 준
○ 도심의 기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	○ 남동구 관내 충전소 운영자에 한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 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 초본·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②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주민등록 초본·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①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별지2) ② 생업을 위한 거주사유 증빙자료 ①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별지2) ② 대상 취학생의 주민등록 초본·등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대상 취학생의 졸업 증명서 및 학적부 사본 등 증빙자료

1) 해당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1> 광역권별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에 표기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임.

【별표 3】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동일 선정순위자 우선순위 추첨 요령**

구 분	추첨요령	비고
1. 추첨장소 입실제한	○ 민원접수 1건당 신청인(또는 대리인) 1인만 입실 ①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명찰 또는 공무원증 패용) ○ 필요시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 1~2명 입실	
2. 추첨권 부여	○ 추첨권자 :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지참서류 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②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③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3. 추첨방법	○ 추첨순위 추첨 ① 추첨함에 노선별 동일순위자 수 만큼 순위를 번호별로 기재한 추첨순위 결정용지를 담당공무원이 투입 ② 민원서류 접수 순서대로 담당공무원이 호명하여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각자 1매씩 추첨 ③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추첨순위 결정용지에 주소, 성명 서명 후 임시보관 ○ 우선순위 결정 추첨 ① 추첨함에 노선별 동일순위자 수 만큼 순위를 번호별로 기재한 우선순위 결정용지를 담당공무원이 투입 ② 추첨순위 순서대로 담당공무원이 신청인(또는 대리인) 번호 호명 ③ 담당공무원이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서명된 추첨순위 결정용지를 확인 및 회수 후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우선순위 결정용지를 각자 1매씩 추첨 ④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추첨된 우선순위 결정용지에 주소, 성명, 노선명, 신청지번, 전화번호 기재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⑤ 우선순위 결정 추첨 결과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명부 작성	

【별지 제1호서식】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지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목적, 시설규모, 운영, 안전관리, 건축허가 신청 및 사업시행 예정일, 재원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기재) 2.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3. 지적도 및 위치도(사업소 위치를 표시한 것) 4. 등기부등본(토지) 5.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신청하는 경우) 6. 충전소 시설 배치계획(도로점용계획 포함) 도면 및 공사계획도면(대지 종·횡단면도), 현황실측도 7. 주변상황(공동주택, 의료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격거리 등) 표시도면 8. 지정당시 거주자 확인기준 서류(【별표 2】참조) 및 심사서류(별지2서식) 9.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충전소를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별지3서식)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

신청인			
항목			
본적			
현주소			
개발제한구역 내 최초거주	일자		
	주소		
구역 외 거주기간		사 유	

2020. . .

제출자 성명 : (인)
주소 :

남동구청장 귀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3. 18.>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다)부터 마)까지의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 중 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2호가목1)다)의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kg)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kg/L)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라)에서 같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충전기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

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변경 전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이 경우 안전성평가의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신청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2) 안전성평가 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용량 증가 또는 수량 증가로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3)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변경할 것

(4) 저장설비와 충전설비(전용공업지역에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장설비가

지상에 설치된 저장능력 30톤을 초과하는 용기충전시설의 충전설비는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17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 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 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 m
40톤 초과	30 m

사)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아)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저장탱크를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다)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일 안에서의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처리능력은 연간 1만톤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1만톤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소형용기와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

(2) 1984년 8월 28일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저장설비의 처리 능력을 줄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마)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1(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분의 1) 이상일 것

사)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는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천kg 미만인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자)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세이프티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차) 저장탱크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과충전 경보 또는 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과피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2) 저온저장탱크[이중각(二重殼)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그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3)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충전시설에는 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잔량측정기·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재료로 되어 있을 것

나) 배관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 라) 배관은 신축(伸縮) 등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바)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하고 표시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한 경우 즉시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충전기 주위, 저장설비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 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다)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를 옮겨 넣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 라)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일 것
- 마)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바)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바깥 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비와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사)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아) 용기 보관장소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나) 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는 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이입·충전장소에는 소화를 위하여 살수장치, 물분무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가) 충전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사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시설에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과 충전용기 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가스설비 설치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충전장소와 저장설비(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는 불연재료나 난연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며,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유리는 망입유리나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 충전된 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 전체에 대하여 누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조식 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용기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잔가스 제거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다만 용기 재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기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라) 소형용기 중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온도에서 가스누출시험을 할 수 있는 온수시험탱크를 갖추는 것

마) 소형용기 중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시설에는 캔밸브[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말한다. 이하 마)에서 같다] 교체를 위하여 캔밸브 교체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캔밸브를 교체하는 경우 그 용기 안의 잔가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잔가스는 다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 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 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1)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 (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로리의 안전을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kg)

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	17m	12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40톤 초과	30m	20m

- (4)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각 벌크로리별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3)의 단서에 따라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 설정 시 벌크로리 간에는 1m 이상 거리를 두고 각각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을 설정한다.

9) 표시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1)가) 및 아)에 대하여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다) 나)에 따라 1)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거리는 해당 충전소의 충전소 허가신청일과 보호시설에 대한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라)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사용할 수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안전하게 설치할 것.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임시저장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설치·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설비일 것

(2)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의 상부,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집광판, 접속반, 인버터, 분전반 등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0종 장소, 1종 장소 및 2종 장소를 말한다)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다) 저장설비실 안으로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에는 방폭형 등화를 휴대할 것

라)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마)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8m 이내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을 것

바) 소형저장탱크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 두지 않을 것

사)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세이프티 커플링의 주밸브는 액봉(液封) 방지를 위하여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그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 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닫아 두어야 한다.

자)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차) 용기 보관장소에 충전용기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할 것

- (1) 용기 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 (2) 용기 보관장소의 주위 8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 (3)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 (4)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이나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
- (5) 용기 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燈火)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 (6) 용기 보관장소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해 놓을 것

카)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타)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파)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연결하려면 그 이음쇠와 연결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하)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1)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상태를 포함한다)을 표시할 것
- (2)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와 방향을 표시할 것
- (3) 밸브등을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4)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거)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하려면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후에 하여야 하고,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 너)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검사기관 중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에 보내 폐기할 것
- 러)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충전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해당 충전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2) 제조 및 충전기준

- 가)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가스의 용량이 상용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 (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사이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다) 가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 라) 액화석유가스가 공기 중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혼합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공업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섞어 용기에 충전할 것
- 마)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 (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 (3)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4)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5시간 이상 연속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탱크에 접속하지 않을 것
- 바) 충전설비에서 가스충전작업을 하려면 외부에서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 사)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할 것
- $$G = V/C$$
- 여기에서
-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kg)

V: 용기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아)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으면 열습포나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자) 소형용기 중 접합 또는 납땜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에어줄충전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충전하는 가스의 압력과 성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접합 또는 납땜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0.52MPa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프로필렌은 10mol% 이하, 부탄+부틸렌은 90mol% 이상

(2)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1.53MPa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프로필렌 90mol% 이상

차)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후 과충전된 것은 가스회수장치로 보내 초과량을 회수하고 부족한 양은 재충전할 것

카)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할 것

(1)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 다음의 안전점검을 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할 것

(가) 외관검사

① 제조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용접용기일 것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의 상태가 4급에 해당하는 찌힌 흠(긁힌 흠), 부식, 우그러짐 및 화염(전기불꽃)에 의한 흠이 없을 것

(나) 캔밸브와 용기밸브

① 캔밸브와 용기밸브는 부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부착연월이 새겨져 있을 것

②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 주름, 부식 등이 없을 것

(다) 표시사항

충전사업자는 용접용기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된 것은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 (2)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접용기에 부탄가스 또는 프로판가스를 충전할 때마다 그 용접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충전하여야 한다.

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송출하거나 이입하려면 "가스충전 중"이라 표시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 (2)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 (3)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하) 벌크로리로 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 (1)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 후 충전할 것

- (2)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할 것

- (3)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펌프 등의 작동을 주의·감시하여 과충전 방지 등 작업 중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4)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세이프티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 (5)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할 것. 다만, 저장탱크 설치 장소까지 벌크로리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벌크로리의 충전호스 커플링을 통하여 충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충전호스 커플링 연결부 등을 감시하는 사람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점검기준

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작동 상황을 주기적(충전설비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 중 외관이 불량한 용기에 대해서는 가목8)다)에 따른 시설로 누출시험을 실시하고 그 밖의 용기에 대해서는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출시험을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는 연속공정에 의하여 $55\pm 2^{\circ}\text{C}$ 의 온수조에 60초 이상 통과시키는 누출검사를 모든 용기에 대하여 실시하고, 불합격된 용기는 파기할 것

라)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과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라)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맨 끝 부분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 주기는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로 한다.

마)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하여 누출량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고, 작동이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바) 정전기 제거 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 (1) 지상에서의 접지저항치
-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 상태
- (3) 지상에서의 절선 부분이나 그 밖의 손상 부분의 유무

사)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통수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아) 슬립 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자)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차)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가)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은 사업소의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공사가 끝나는 즉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철거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충전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1)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운반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른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합 또는 납땜용기를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본다.

(2) 충전사업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하는 대리점 등과 가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한다.

(3) 대리점이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하려면 식품접객업소등과 가스사고 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하며, 충전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 대상 차량에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 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자)까지, 1)파)·1)거)·2)가)·2)나)·2)라)부터 타)까지, 2)하)·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가)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나)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다)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 1)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가) 및 나)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능력변경은 사업소 안의 합산 저장능력이 30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사항은 제1호가목1)바)(1)부터 (3)까지에 따른 것

다)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	17m	12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40톤 초과	30m	20m

- 2)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저장설비 저장능력의 총합이 15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3)마)·바)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 시 산입된 저장능력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로딩암, 충전기, 충전호스, 차양 등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3) 충전 시 자동차의 오발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발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4)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 설치실과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벽, 기둥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5)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충전사업 용도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가)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나)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다) 충전소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마) 충전소 종사자의 숙소

바)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사)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창고

아) 자동차 세차를 위한 시설

자)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차)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

카)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한다), 자동차 전시장, 고객휴게실, 휴게음식점, 자동차 영업소 및 일반사무실로서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위치, 구조 등을 갖춘 것

타)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파)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하) 제1호가목10)바)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 6) 5)바)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7) 5)나)·다)·바)·사) 및 차)부터 파)까지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 8) 자동차 제조사나 연구소에 설치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2)가) 및 5)부터 7)까지의 시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9)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가)와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1)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10)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바)·1)사)·3)마)·3)바)·4)다)·6)아), 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시키도록 운전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충전이 끝나면 접속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시킬 것

2) 충전장의 충전기앞(옆) 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 방향을 표시할 것

3)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차)·1)러)·2)자)·2)차)·2)타)·2)파)·2)하)·3)나)·3)다)·5)나)·5)다)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2)사) 및 아)의 "용기"는 "자동차연료용 용기"로 보고, 제1호나목5)가)의 "제1호나목"은 "제2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의 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차)까지, 1)과)·1)거)·2)가)·2)나), 2)라)부터 하)까지, 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와 제2호나목 1)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1)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2)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3) 전기·계장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분야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	--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을 포함한다)

가. 시설기준

-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4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소형용기 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시설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않는다.
- 2) 마운드형 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저장설비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 3)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탱크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 4)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제1호가목3)가)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제1호가목3)차)와 관련하여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5)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 설치실과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6) 사업장 밖으로 연장된 배관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된 사업장 밖의 배관기준을 적용한다.
- 7)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8)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제1호가목[1)바), 3)마)부터 자)까지, 4)다) · 6)아) · 7)나), 8)나)부터 바)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 나)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제1호가목[1)바), 3)마)부터 자)까지, 4)다) · 6)아) · 7)나), 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충전이 끝나면 접속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할 것
- 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 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 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수 여부 및 운반책임자의 자격 또는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것
- 4)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경우 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송할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 5)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 2)마)·2)아)·2)자)·2)타)·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2)라) 및 사)의 "용기"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보고, 제1호나목5)가)의 "제1호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 나)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 1)러), 2)마), 2)사)부터 하)까지, 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제3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의 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차)까지, 1)파)·1)거)·1)너)·2)가)·2)나), 2)라)부터 하)까지, 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와 제3호나목1)·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1)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패, 공정안전 관리 실패, 저장 탱크 운영 실패,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패
(2)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 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3)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패,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패,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0.01 조례 제1020호

(일부개정) 2018.03.30 조례 제1468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6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 16호 별표 1 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등의 노후로 인한 증설없는 시설의 변경 및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동일부지 내에서 안전관리 강화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시에는 제외한다.

제4조(허가요건) 법 제5조, 제6조,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여 허가요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10. 1. 조례 제10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3. 30.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구 분	허 가 요 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 16m이상인 도로에 부지 일면의 길이가 20m이상 접할 것.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할 것. 3.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거리의 2배를 적용할 것. 4.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 충전설비는 대표자의 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을 것.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 중 허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는 용기보관실 38㎡, 사무실은 18㎡, 전용주차면적 46㎡이상을 확보하고,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는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된 건물일 것. (다만, 1종 보호시설 및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함)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신규허가 시 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1,000m이상을 유지할 것. 5. 일과 종료 후 가스사고발생에 대비하여 1인 이상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에 상주시킬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간 일정장소에서 야간 근무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상주시켜야 하며, 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관련법상 설치 가능한 용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한다.

【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건설과 협의 검토]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0. 7. 31] [대통령령 제30886호, 2020. 7.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 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갯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부 칙 <대통령령 제30886호, 2020. 7. 31.>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20.] [인천광역시조례 제6089호, 2019. 2. 2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괴(損潰)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5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완공 후 7일까지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02-20 조례 제6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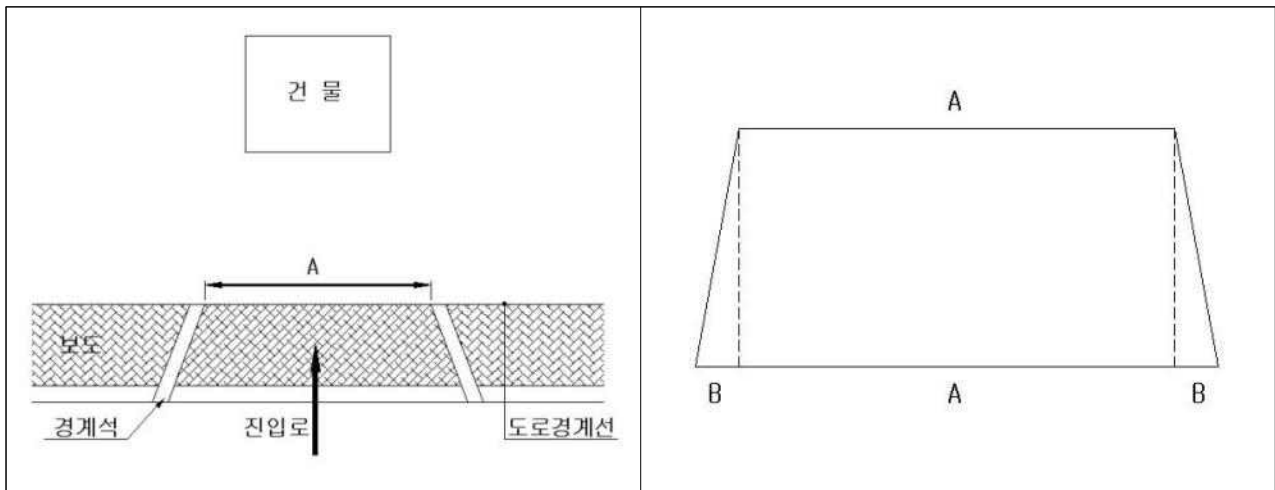
[별표] <개정 2019-02-20>

시 공 기 준

(1)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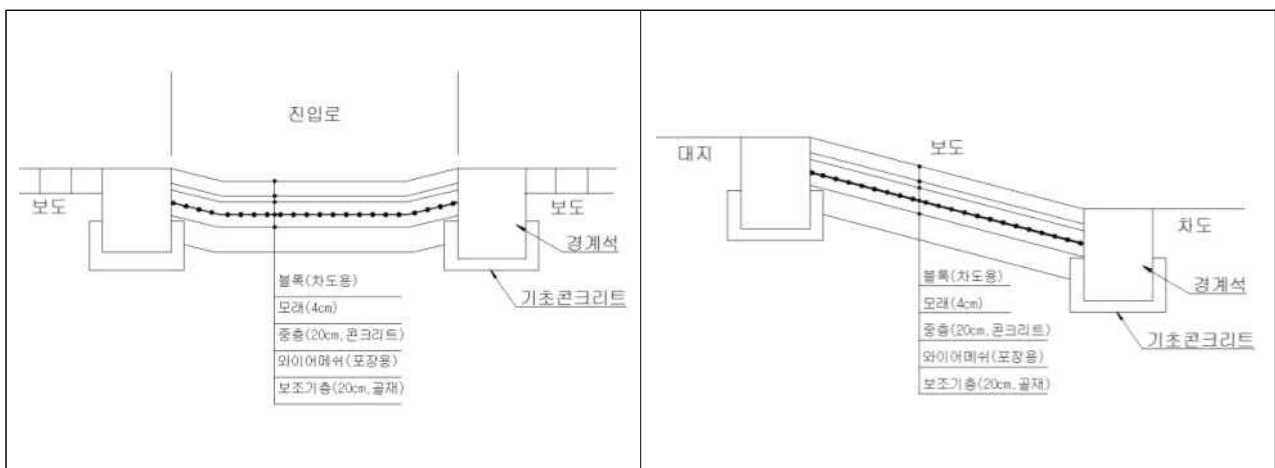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5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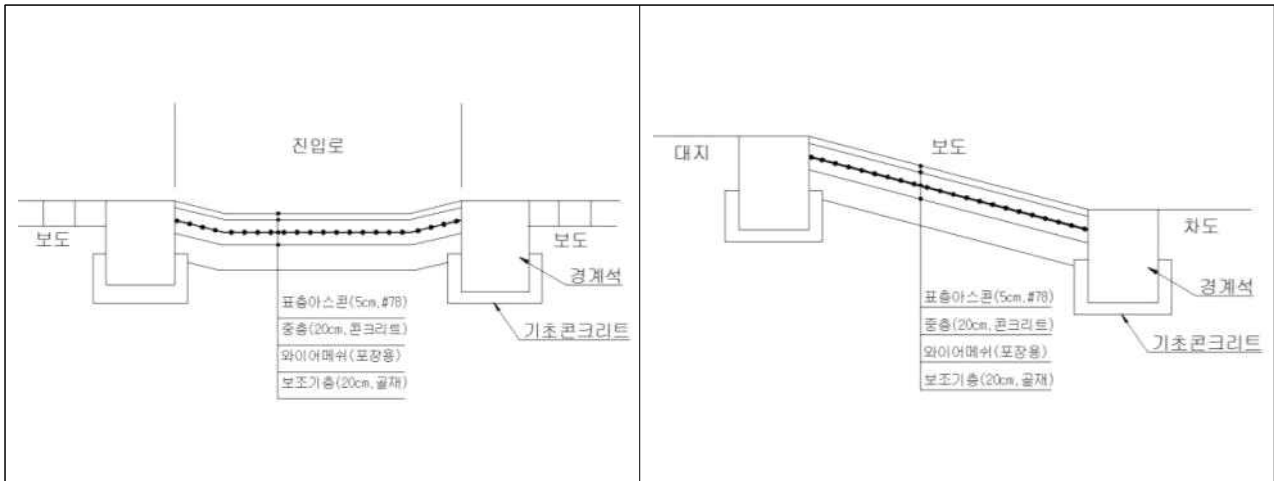


[표준단면]

[횡단면]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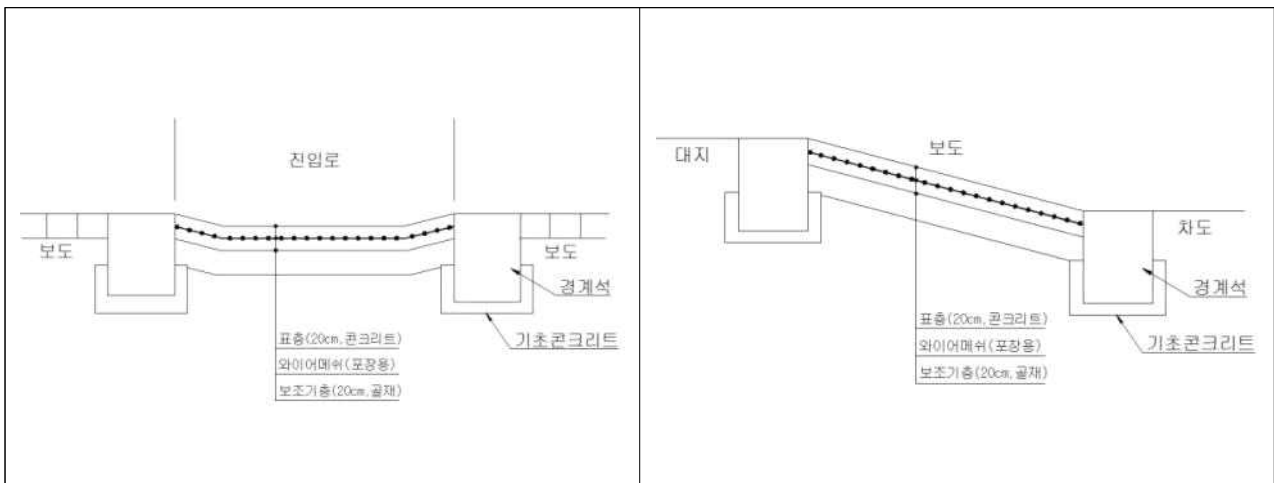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 도로점용 허가조건(차량출입시설)

1. 도로점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발시 도로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 및 도로법 제117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료 산출식 : 점용면적×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0.02×12/12년】
3. 설치위치를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서와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별표]시공기준에 의할 것】
4. 권리의무의 승계시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도로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5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5. 도로관리청의 공공사업 또는 필요시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전(설) 및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사고 및 유지관리는 점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도로점용(인도포함)으로 인한 도로파손시 원상복구하고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점용구간내 지장물(전주, 맨홀, 도시가스, 통신관로, 가로수목)은 진입로 설치시 까지 관계기관 및 **우리구(공원녹지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허가기간 만료 후 도로점용 공사완료 확인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허가조건 미이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없이 도로부지내 시설물 설치시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10. 도로점용 허가 받은 구역 외, 공사 중에 훼손시킨 인접 보도 및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시 점용허가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678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8.19. ~ 2020.9.2.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인천83나1880외 2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2020년 8월 19일

남 동 구 청 장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 번호	차 명	차량등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구분	채권자/축탁기관 /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0-00147	인천83나 1880	봉고프런 티어	황*호 /63****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길 2*, **/* 일****라 *동 **1호(효*동)	(주)인천 폐차사업소 /2020.5.27.	압류	인천지방법원	2002.12.06	사건2002카단3038 1	자동차가압류
						압류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	2003.04.0 3	징수6508-35445	체납처분에의한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2003.08.0 4	환위67100-2844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	인천계양구청	2003.09.1 6	세무13410-3381	지방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2003091508173)
						압류	부천시청	2003.12.2 9	교지91123-6706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	인천계양구청	2004.03.0 9	교통행정과-4081	정기검사자연과태료체납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2004.05.0 3	징수1621-275	체납처분에의한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003-008769)	2004.07.1 0	교통행정과-158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태료 압류금액:300,000
						압류	인천계양경찰서	2005.06.1 6	경비교통과-4478	과태료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0572307012807)
						압류	인천계양경찰서	2005.09.0 5	경비교통과-6642	과태료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0572307027971)
						압류	인천계양구청(450-5419)	2005.09.1 3	환경위생과-14056	정밀검사와과태료체납
						압류	인천남동구청교통과(453-2897)	2006.07.2 4	교통과-27218	주정차위반과태료(200602005972)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2006.11.2 7	교통행정과-46382	주정차위반 과태료[2005-08-104907]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007.06.1 5	교통행정과-20562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체납(017718-00)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007.06.1 5	교통행정과-20562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체납(017719-00)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2008.01.0 8	환경위생과-521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08.03.1 1	주차관리과-3014	주정차위반과태료(200706001088)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08.03.1 1	주차관리과-3014	주정차위반과태료(200706003631)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8.07.1	주차관리과-994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2007-11-007454)

								0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2009.07.14	환경과-6513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채납
						압류	계양구	2009.10.13	교통행정과-43941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채납(2009-004974)
						압류	계양구	2009.10.13	교통행정과-43941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채납(2009-004975)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2010.01.06	97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인천 계양구청	2010.07.02	환경과-12138	환경개선부담금 채납(2010-01-1-28245101-006058)
						압류	인천 계양구청	2010.09.08	세무과-15523	지방세채납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2011.01.06	환경과-294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채납압류(032-450-5406)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2011.07.14	환경과-13856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2011.10.24	교통과-47930	주정차위반과태료 (2011-19801)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2012.01.09	환경과-629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2012.06.28	환경과-14524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인천 계양구청	2012.10.19	환경과-25173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채납(2008-01-1-28245101-006519)
						압류	인천 계양구청	2012.10.19	환경과-25173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채납(2008-02-1-28245101-006325)
						압류	인천계양구청	2012.12.26	환경과-32248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채납자에 대한 압류(2012-02-1-28245101-008079)
2020-00154	69로0526	아반떼 스포츠(AV ANTE SPORT)	안*홍 /92****	서울특별시 강*구 천****길 2*, **4호(성*동)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2020.6.2.					
						구분	채권자/축탁기관 /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압류	영천시청 세정과	2018.02.13	세정과-2063	지방세 채납
						압류	서울시 강동구 세무2과	2019.09.09	세무2과-18524	지방세채납
2020-00166	58아9706	마티즈 0.8S AT	강*인 /8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길 7*, **2호(송*동, 진*****트)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2020.6.23.					
						구분	채권자/축탁기관 /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2015.09.11	세무1과-16956	지방세 채납
						압류	인천남부경찰서	2015.10.01	2015D2303020583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370150659894)
압류	인천서구청 주차관리과	2016.03.14	주차관리과-7556	주정차위반과태료(2015-11-000638)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청(032-560-4930)	2016.08.02	교통민원과-46271	세외수입과태료(2016-003902-00)
						압류	인천서구청주차관리과	2017.03.13	주차관리과-8754	주정차위반과태료(2016-11-000298)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2017.08.01	징수부-905838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체납액(건강:741890 연금:0고용:0산재:0)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8.06.14	교통행정과-15424	주정차위반과태료(2018-03-002785)
						압류	부천시청(부천도시공사)	2018.06.27	주차시설과-5478	부천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체납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8.09.10	교통행정과-23563	주정차위반과태료(2018-06-002840)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청	2018.10.08	교통민원과-75424	세외수입과태료(2018-41-288080-013525-00 외)
						압류	인천 서구청(032-560-4930)	2019.04.09	교통민원과-27379	세외수입과태료체납처분 (2019, 책임보험미가입, 001286-00 외 전부)
						영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징수과	2019.05.13		보관장소: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세입징수과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7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 9. 2.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 8. 18. ~ 2020. 9. 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3 -0200229	제주까망돼지	전O혁	구월남로 114, 1층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 7. 1.	2020. 9. 2.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0. 9. 1.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0년 8월 18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34호

코로나 19 관련 남동구 관내 집합행위 금지 해제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고시한 집합행위 금지 고시 일부를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남 동 구 청 장

1. 해제 고시명

가. 남동구고시 제2020-131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고시(추가)

나. 남동구고시 제2020-132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남동구 청사 등 시·구
유부지 내 집합 금지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3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모래마을 4호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모래마을 4호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생활경제과 ☎032-453-2664,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1-19번지 외 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모래마을 4호 공영주차장)
- 명칭: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주차장(공중화장실) 신축공사(신규)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주차장 결정 면적 $A=876.3\text{m}^2$
- 변경: 주차장 결정 면적 $A=876.3\text{m}^2$
부대시설(공중화장실) 신축 연면적 $A=116.3\text{m}^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생활경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착수예정일: 2020. 8.20.

○ 준공예정일: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구월동)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1261-19	주차장	136.4	136.4	남동구				
2	1324-13	주차장	129.8	129.8	인천광역시				
3	1269	주차장	503.9	503.9	남동구				
4	349-659	주차장	47	47	남동구				
5	349-662	주차장	60	60	남동구				
소 계			876.3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3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구월동) 외 3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2 (구월동)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구월동)	20090706	인근에 위치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2008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예술로 212 기초구간에위치하여212를건물 번호로부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71, 33-72, 33-74, 33-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69-235 (논현동)	20091116	소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08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로154번길 69-235 기초구간에위치하여69-235를건 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16-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284번길 33 (간석동)	20091116	예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08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예술로284번길 33 기초구간에위치하여33을건물번 호로부여	케이케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48번길 141 (고잔동)	200911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08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청능대로448번길 141 기초구간에위치하여141을건물 번호로부여	(주)엠에스제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2 (구월동)	2020.8.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16-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284번길 33 (간석동)	2020.8.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48번길 139 (고잔동)	2020.8.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